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추가하여 공공주택 사업의 재원을 다각화하고 공공주택 사업 조성 속도를 제고하고자 함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원활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하고, 해당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차량 전용 주차면수 1개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주차기준 특례도 적용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2.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에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호”를 “제11호”로 한다.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제37조제4항 중 “체결한”을 “체결한 주택으로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역세권으로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건설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한”으로, “적용할 수 있다”를 “적용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 7. (생략)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은 그 설립 근거법령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거나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법인(이하 “공동출자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하여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생략)	제6조(공공주택사업자)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9.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② ----- 제11호----- ----- -----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 ③ (생략) ④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세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세대당 주차대수 기준을 0.3대로 적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⑤ · ⑥ (생략)	제37조(기존주택등의 매입)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체결한 주택으로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역세권으로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에 건설되는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 요건을 정한 --- 적용한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을 적용한다. ⑤ · ⑥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연 락 처	(044) 201 - 4533 (044) 201 - 4443